

제2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6.10.26.)

조례안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종설]

목 차

1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6
3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4
4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 출연안	28
5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승강기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	34
6	청소년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1
7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55
8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67
9	2017 회장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유치 동의안	73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10. 17.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10. 18.

2. 개정이유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 개정·공포(‘16.1.19 공포, 9.1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과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 법령 개정취지에 맞게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재기재 및 확인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상위법령 위반사항 등을 정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제명, 위원회 명칭, 인용법명 변경함

-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나. 위원 구성 시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재기재·확인하여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발생된 법령위반사항을 바로 잡음(안 제2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구성

다.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재기재·확인하는 조항 삭제(정비)함

- 위원회 기능(법 제25조), 구성(시행령 제74조), 위원의 해촉(시행령 제73조)

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제8조)

-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회의 소집 및 정족수에 관한 사항, 의견청취, 간사, 실비보상,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 제7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6. 9. 23. ~ 10. 12.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가. 이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 개정·공포('16.1.19 공포, '16.9.1 시행)됨에 따라
- 나.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과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 법령 개정취지에 맞게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재기재 또는 확인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위반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3조(위원의 해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②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제74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이 경우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2명 이상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전]

□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둔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①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10. 17.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10. 18.

2. 제안이유

- 2017년도 거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거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출연개요

- 가.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 나. 대 상: 한국지방세연구원(대표 허동훈)
- 다. 사업비: 3,200천원(출연 예정금액)
- 2017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천원)

사업기간	2016년 예산액	2017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7년	3,085	3,200	3,200			3,200	

- 라. 사업내용: 지방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지방의 혁신역량 제고 등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과제 선정, 연구 수행

4. 부서의견

- 가.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나.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 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에 기여하고 있으며
- 다.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 없음

5. 참고사항

- 가. 출연기관 현황: 붙임 참조
- 나.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다. 기타 참고자료(출연금 배정 협조공문 등): 붙임 참조

6. 검토의견

- 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인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전 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거창군 3,200천원)를 출연하는 것으로
- 나. 금번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안)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7.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 2013.1.1.>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2013.1.1.>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

나.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2.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5

나.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30.>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1.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그 기한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12월 31일 이내로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신설 2010.12.30.>

⑥ 지방세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부칙 <법률 제12687호, 2014.5.28.>

제6조(출자·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붙임 1] 출자·출연 기관현황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	법 률 : 지방세기본법145조				전화번호 : 02-2071-2723		
	시행령 :				홈페이지 : www.kilf.re.kr		
조 례 :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인원현황 (16.05.1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45명 (정규직과 비정규직 합계 인원수)		27명 (6명) * 임원 등을 포함한 정규직원수를 기재하되 과결되거나 당연직 (지자체 임원 등) 공무원 수는 여기에 포함하지 말고 괄호() 로 표시) ※ 예 : 12명 (4명)		18명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인원수를 기재)		
임 원 (16.05.10. 현원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 사 장	허○○	(전)○○광역시장			2014.03.28~2017.03.27	
	부이사장	송○○	○○광역시 ○구 구청장			2016.02.28~2017.02.27	
	원 장	허○○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2014.04.15.~2017.04.14	
	이 사	김○○	○○부 지방세제정책관			당연직	
	이 사	이○○	○○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16.02.28~2017.02.27	
	이 사	이○○	○○광역시 재정기획관			2016.02.28~2017.02.27	
	이 사	김○○	○○도 자치행정국장			2016.02.28~2017.02.27	
	이 사	신○○	○○도 행정국장			2016.02.28~2017.02.27	
	이 사	신○○	○○광역시 ○○구 부구청장			2016.02.28~2017.02.27	
	이 사	이○○	○○도 ○○시 부시장			2016.02.28~2017.02.27	
	이 사	오○○	○○도 ○○군 부군수			2016.02.28~2017.02.27	
	이 사	박○○	○○대 교수			2015.02.28~2017.02.27	
	감 사	이○○	○○부 지방세정책과장			당연직	
	감 사	조○○	○○특별시 재무국장			2016.02.28~2018.02.27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22,836 (설립이후 직전연도말까 지 지자체가 출자·출연 한 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재무현황 (백만원) '15.12.31기준	자산	6,665 (자산 총액)
	예산액 ²⁾	8,315	7,518	8,406		부채	62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³⁾	7,712	7,198	8,276		자본 ¹⁾	6,603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5.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7,425			5,990		1,435	

[붙임 2] 기타 참고자료

지역 상생발전을 선도하는 한국의 대표 연구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회 사전심의를 위한 관련자료 송부

1. 귀 시·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년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 심의(안) 작성을 위한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년 출연금 의회 사전심의 자료(별첨자료포함). 끝.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신자 서울특별시(세정과장), 부산광역시(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세정과장), 광주광역시(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세정과장), 울산광역시(세정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세정담당관),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담당관), 경상북도지사(세정담당관),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종로구청장(세무1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 용산구청장(세무1과장), 성동구청장(세무1과장), 광진구청장(세무1과장), 동대문구청장(세무1과장), 중랑구청장(세무1과장), 성북구청장(세무1과장), 강북구청장(세무과장), 도봉구청장(징수과장), 노원구청장(재무과장), 은평구청장(세무1과장), 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 마포구청장(세무1과장), 기획재정부(재무과장), 강서구청장(재무과장), 구로구청장(징수과장), 금천구청장(세무1과장), 영등포구청장(세무과장), 동작구청장(세무1과장), 관악구청장(세무1과장), 서초구청장(세무1과장), 강남구청장(세무1과장), 송파구청장(세무1과장), 강동구청장(세무1과장),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세무과장), 영도구청장(세무과장), 부산진구청장(시세과장),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세무1과장),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세무과장), 해운대구청장(세무1과장), 사하구청장(세무과장), 금정구청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세무과장), 연제구청장(세무과장), 수영구청장(세무과장), 사상구청장(세무과장), 기장군수(세무과장),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세무1과장),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세무1과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세무과장), 달성군수(세무과장),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세무과장),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세무과장),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세무1과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세무과장),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세무1과장),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세무1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세무1과장),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세무1과장), 인천광역시 강화군수(재무과장), 인천광역시 옹진군수(재무과장), 광주광역시동구청장(세무과장), 광주광역시서구청장(세무1과장), 광주광역시남구청장(세무과장), 광주광역시북구청장(세무1과장),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세무1과장(수신불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세무과장),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세무과장),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세무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세무과장), 울산광역시중구청장(세무과장), 울산광역시남구청장(세무1과장), 울산광역시동구청장(세무과장), 울산광역시북구청장(세무과장), 울주군수(세무1과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세무과장), 수원시장(세정과장), 성남시장(세정과장), 고양시장(세정과장), 부천시장(세정과장), 용인시장(세정과장), 안산시장(세정과장), 안양시장(세정과장), 남양주시장(세정과장), 의정부시장(세정과장), 평택시장(세정과장), 시흥시장(세정과장), 화성시장(세정과장), 광명시장(세정과장), 파주시장(세정과장), 군포시장(세정과장), 광주시장(세정과장), 김포시장(세정과), 인천시장(세무과장), 구리시장(세무과장), 양주시장(세무과장), 안성시장(세무과장), 포천시장(세정과장), 오산시장(세무과장), 하남시장(세무과장), 의왕시장(세무과장), 여주시장(세무과장), 동두천시장(세무과장), 양평군수(세무과장), 과천시장(세무과장), 가평군수(세정과장), 연천군수(세무회계과장), 춘천시장(세정과장), 원주시장(세무과장), 강릉시장(세무과장), 동해시장(세무과장), 태백시장(세무과장), 속초시장(세무과장), 삼척시장(세무과장), 홍천군수(재무과장), 횡성군수(세무회계과장), 영월군수(재무과장), 평창군수(재무과장), 정선군수(세무회계과장), 철원군수(세무과장), 화천군수(재무과장), 양구군수(재정운영과장), 인제군수(세무회계과장), 고성군수(재무과장), 양양군수(세무회계과장), 청주시장(세정과장), 충주시장(세정과장), 제천시장(세정과장), 보은군수(재무과장), 옥천군수(재무과장), 영동군수(재무과장), 증평군수(재무과장), 진천군수(세정과장), 괴산군수(재무과장), 음성군수(재무과장), 단양군수(재무과장), 천안시장(세정과장), 공주시장(세무과장), 보령시장(세무과장), 아산시장(세무과장), 서산시장(세무과장), 논산시장(세무과장), 계룡시장(세무회계과장), 당진시장(세무과장), 금산군수(재무과장), 부여군수(재무과장), 서천군수(재무과장), 청양군수(재무과장), 홍성군수(재무과장), 예산군수(재무과장), 태안군수(재무과장), 전주시장(재무과장), 군산시장(세무과장), 익산시장(세무과장), 정읍시장(세정과장), 남원시장(재정과장), 김제시장(세정과장), 완주군수(재정관리과장), 진안군수(기획재정실장), 무주군수(재무과장), 장수군수(재무과장), 임실군수(재무과장), 순창군수(재무과장), 고창군수(재무과장), 부안군수(재무과장), 목포시장(세정과장), 여수시장(세무과장), 순천시장(세무과장), 나주시장(세무과장), 광양시장(세정과장), 담양군수(세무회계과장), 곡성군수(재무과장), 구례군수(재무과장), 고흥군수(재무과장), 보성군수(재무과장), 화순군수(재무과장), 장흥군수(재무과장), 강진군수(세무회계과장), 해남군수(세무회계과장), 영암군수(재무과장), 무안군수(재무과장), 함평군수(재무과장), 영광군수(세무회계과장), 장성군수(재무과장), 완도군수(재무과장), 진도군수(세무회계과장), 신안군수(세무회계과장), 포항시장(세정과장), 경주시장(세정과장), 김천시장(세정과장), 안동시장(세정과장), 안동행정국장(세무과장), 영주시장(세무과장), 영천시장(세정과장), 상주시장(세정과장), 문경시장(세무과장), 경산시장(세무과장), 군위군수(재무과장), 의성군수(재무과장), 청송군수(재무과장), 영양군수(재무과장), 영덕군수(재무과장), 청도군수(재무과장), 고령군수(재무과장), 성주군수(재무과장), 칠곡군수(세무과장), 예천군수(재무과장), 봉화군수(재정과장), 울진군수(재무과장), 울릉군수(재무과장), 창원시장(세정과장), 진주시장(세무과장), 통영시장(세무과장), 사천시장(세무과장), 김해시장(회계과장), 밀양시장(세무과장), 거제시장(세무과장), 양산시장(세무과장), 의령군수(재무과장), 함안군수(재무과장), 창녕군수(재무과장), 고성군수(재무과장), 남해군수(재무과장), 하동군수(재무과장), 산청군수(재무과장), 함양군수(재무과장), 거창군수(재무과장), 합천군수(재무과장)

대리	행정지원부장	경영지원본부	2016. 5. 17.
		장	
협조자			
시행	경영지원본부-840	(2016. 5. 17.)	접수 재무과-10589 (2016. 5. 17.)
우 150-86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가길 14-0 한국지방세연구 / http://www.kilf.re.kr		
전화번호	02-2071-2723	팩스번호	02-2071-2722 / s1h11@kilf.re.kr / 대국민 공개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경 상 남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 통보

1.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3069호(2016. 8. 25.)와 관련됩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을 통보하오니,
3. 각 시·군에서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예산편성, 통보, 정산 등 필요한 절차를 원활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붙임 출연금 산정서식에 따라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산정하여 '16. 9. 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 1부.
2.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산정서식 1부. 끝.

경 상 남 도 지 사

수신자 전 시군 세무부서장

주무관

세정담당

세정과장

전결 2016. 8. 26.

협조자

시행 세정과-9868

(2016. 8. 26.)

접수 재무과-19989

(2016. 8. 26.)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사림동) / <http://gyeongnam.go.kr>

전화번호 055-211-3717 팩스번호 055-211-3719 / dakaski@korea.kr / 비공개(5)

정부3.0 경남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10. 17.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10. 18.

2. 제정이유

-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거창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법인격을 정함(안 제2조)

-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

다. 사업을 정함(안 제3조)

-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 지역문화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 거창한마당대축제 및 국제연극제의 기획·운영 등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운영재원을 정함(안 제4조)

- 군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

마. 수익사업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 재단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 후 가능

바. 공무원 파견 및 겸임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 필요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음

사. 검사·보고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 검사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법」 제32조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15,550백만원

다. 합 의: 기획감사실(예산담당,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6. 9. 19. ~ 10. 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가. 이 조례안은 거창군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 나.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역문화진흥법」의 규정에 근거 되어 있으며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6.5.10.] [대통령령 제27129호, 2016.5.10., 타법개정]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운영)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범위
2.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

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9.25.] [법률 제12507호, 2014.3.24., 제정]

◇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出資)·출연(出捐) 기관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과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기관에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적용할 설립 전의 절차와 지도·감독 권한 등의 규정이 없어 출자·출연 기관에서 매년 채용 비리와 부실 경영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조직·예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 대상 등(제2조)

1)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으나 「지방공기업법」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출자·출연 기관이 있으나, 이러한 기관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관리가 잘 되지 아니하고 있음.

2) 이 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과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등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함.

3) 법률 적용 대상 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주민복리의 증진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식회사·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자·출연과 설립 전 협의(제4조 및 제7조)

1)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그동안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재정이 어려운 데에도 새로운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그 결과 출자·출연 기관이 그 운영 과정에서 비효성과 중복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2)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 분야에서 주민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설립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그 설립이 이 법의 규정에 맞는지 등에 관하여 시·도지사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기 전에 그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무분별한 기관 신설을 방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인사 등(제9조부터 제15조까지)

1) 출자·출연 기관이 임직원을 채용할 때에 최소한의 자격기준과 채용 절차 등이 없어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부정한 채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임원의 의무 등에 관하여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2)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고, 모든 채용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임원이 법령 등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임기 중에 달성하여야 하는 경영 목표에 대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달성 정도를 다음 연도의 보수에 반영하도록 함.

4) 채용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무자격자 또는 정실(情實)에 의한 채용 등을 방지하여 인사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고, 특히 임원의 의무와 기관장의 책임이 강화되어 출자·출연 기관 운영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됨.

라.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과 회계(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1)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요건을 명확히 하고, 경영성과와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생한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하며,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회계처리의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마련되어 예산과 회계처리가 자의적인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출자·출연 기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제24조)

1)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해산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사 중복기관이나 사업 목적을 상실한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한편, 출자·출연 기관에서도 해산 요건을 법률이 아닌 정관(定款)이나 조례 등으로 정하고 있어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설립목적 달성, 존립기간 만료나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나 경영진단 결과 민영화 추진 대상 기관으로 정해진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와 공시 등(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1)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경영 실적 평가의 대상 기관, 평가 시기, 평가 항목 등이 달라, 같은 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에서 누락되거나 이를 반영한 보수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등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통보 받아 그 결과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보수 삭감 등의 인사 조치, 조직개편, 기관의 해산과 민영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3) 경영실적의 평가 대상 기관, 평가 시기, 평가 항목과 평가 이후의 조치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편차를 줄이고, 평가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출자·출연 기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5.9.25.] [법률 제12507호, 2014.3.24., 제정]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출자·출연 기관은 해당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8조(정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 의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출자·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임원) ①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한다.

제12조(직원의 채용) ① 출자·출연 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

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 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④ 출자·출연 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출자·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연도) 출자·출연 기관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①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편성 등과 그 보고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결산)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

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6조(검사·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행정자치부장관은 출자·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제35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상법」과 「민법」의 준용)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자기관은 「상법」을 준용하고, 출연기관은 「민법」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9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채(社債)의 발행

2. 공고의 방법
3.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제14조(예산의 편성 등) ① 출자·출연 기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편성하는 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속 임직원 등의 인건비
2. 계속비에 관한 설명서
3.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4. 예산이월 설명서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호에 따라 다음 연도의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운영지침(이하 "예산편성지침"이라 한다)을 매년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작성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출자금·출연금 등의 관리) 출자·출연 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집행계획을 제출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이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려는 때에는 출자·출연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대행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④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때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附帶)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18조(지도·감독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2. 법 제21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이 대행하는 사업
3. 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을 보증한 사업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②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
2.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 「민법」

[시행 2016.2.4.] [법률 제13125호, 2015.2.3., 일부개정]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3절 기관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0조(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 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절 해산

제77조(해산사유)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가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비 용 추 계 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재단설립에 따른 출연금 및 법정 운영 경비 및 축제행사 경비 보조
- 관련 조문: 안 제4조(운영재원 등)

2. 비용추계의 결과

-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총 비용(a - b)	3400	2,850	2,850	2,850	2,850	14,800	
세출	국비			300	300	600	
	도비			200	200	400	
	군비	3,550	3,000	3,000	2,500	2,500	14,550
	소계(a)	3,550	3,000	3,000	3,000	3,000	15,550
세입	소계(b)	150	150	150	150	150	750

3. 관련 의견

- 높아진 지역 문화수준에 발맞추어 문화예술의 전문화, 효율화
- 효율적 예산운영을 통한 재정절감을 도모코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출연금: 50백만원
- 축제 등 행사 보조: 1,900백만원
- 법정운영보조: 600백만원
- 경상사업 보조: 500백만원
- 자본보조: 500백만원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신 판 성

[재 단 법 인 거 창 문 화 재 단 출 연 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10. 17.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10. 18.

2. 제안이유

- 문화재단 설립으로 군민의 높은 문화향유 욕구에 부응하고
- 문화예술 행사와 축제에 대한 예술적 안목과 문화경영 능력을 겸비한 전문 문화조직 구성으로 지역문화 역량을 결집시키고 문화수준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자 함

3. 출연개요

- 가. 근거법령: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나. 대 상: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이사장 양동인)
- 다. 사 업 비: 50,000천원(출연 예정금액)
- 2016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천원)

사업기간	2016년 예산액	2016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6년	-	50,000	50,000	-	-	50,000	-

- 라. 사업내용: 거창문화재단 설립 출연금 조성

4. 부서 의견

- 가. 거창문화재단은 우리군의 높은 문화향유 욕구에 부응하고 문화 예술·공연의 전문화, 효율화를 위해 설립되어야 하며
- 나. 재단설립 허가조건인 기본재산 조성을 위해 출연금 편성은 필수 요건임

5. 참고사항

- 재단 설립안: 붙임참조

6. 검토 의견

- 가. 거창군문화재단은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운영)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고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1항(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시의 협의 등)
 - 협의 :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 시장·군수는 도지사
 - 예외(협의생략) : 제8조3항(시·군·구가 출자·출연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일 때)
 - 출자금 : 3억원 · 출연금 : 1억원
-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사업 등)의 규정에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
- 다. 금번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 출연(안)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붙임1]

『거창문화재단』 설립(안)

1 **재단설립의 방향**

테마가 있는 거창한 문화 관광

목 표

- 지역 문화관광 정책의 일관성 · 효율성 확보
- 분야별 전문 인력 활동으로 우리군 문화 경쟁력 극대화
- 거창 군민이 참여하는 실존하는 생활형 예술인 다수 육성
- 문화 예술의 지역 브랜드화로 거창한 「문화융성」 시대 달성



- 지역 대표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 거창국제연극제, 거창한마당대축제,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 효율적인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정책개발
 - 문화센터 연계, 문화예술 도시 정책개발, 포럼 · 세미나 개최
- 각종 국·도비 지원사업 공모과 집행
 - 엘시스테마 프로그램, 콘텐츠코리아 랩, 음악도시 등
-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사업
 - 군민 1인 1악기 연주 프로그램 운영
 - 테마있는 상시 거리 공연/로타리, 시장길, 근대의료박물관

2

재단설립 안

1 설립개요

- 위 치 : 거창읍 김천리 거창문화센터
- 시설연왕 : 문화센터
 - 연면적 4,152㎡ / 2,236㎡(지하 1층, 지상 4층)
 - 주요시설 : 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분장실, 휴게실, 음향실, 조명실, 사무실, 무대조종실, 전기실 등
- 설 립 안
 - 이사회 : 15명 이내/ 이사장(거창군수)
 - 조직안 : 2팀 8명/ 상임감독, 사무처장, 기획팀2, 문화사업팀5
 - ※ 공무원 등 파견 : 공무원 4명, 공무원 1명
 - ⇒ 장기적 : 공무원 파견 2명으로 축소, 전문가 확충
 - 예산안 : 3,632백만원/ 출연금 50백만원, 사업비 3,582백만원

2 재단 조직 안



□ 조직 구성

구 분	인원	내 용	비 고
상임감독	1	• 문화재단 홍보	비상근전문가
사무처장	1	• 문화재단 총괄	전문가
기획팀	팀장	1 • 경영 및 기획 총괄 • 제반행정업무 전반	파견
	팀원	1 • 회계, 급여, 근태관리 • 이사회 운영 • 행정업무 지원	파견
문화사업팀	팀장	1 • 축제, 문화행사 기획 총괄 • 거창국제연극제(7월말~8월초) • 콘텐츠사업 추진	전문가
	팀원	1 • 거창한마당대축제(9월 말~10월 초) • 각종 공연 및 행사 지원 • 공모사업 추진	전문가
	시설운영	3 • 시설운영 및 관리 • 시설대관 업무 등	파견

3 재단 운영 안

□ 운영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7조
- 구성 : 15명 이내
 - 위원장 : 부 군 수
 - 위원 : 의회추천 1명, 공무원 1/4이내, 전문지식과 경험자 등
- 임 기 : 공무원이 아닌 자는 2년 이내, 한차례 연임 가능
- 의 결 : 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임 무
 - 출연기관 설립·운영 타당성(법7조), 출연기관 임원 해임(제9조)
 - 경영실적평가과 경영진단,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는 인정사항

□ 임원 및 직원 구성

○ 이사회 구성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정원 : 이사(15명 이내, 이사장-군수), 감사(2명)
- 구성방법 : 10월~11월 경 법률 제9조 2항에 따른 공개모집 임명

○ 직 원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 모집임명 : 공개경쟁시험을 원칙, 곤란 시 경력·자격자 대상 경쟁채용

○ 주요업무

- 초창기 : 국제연극제, 한마당축제, 문화센터, 문화예술지원사업 등
- 정착기 : 문화예술 정책·연구·창작 지원, 지역문화·예술·관광 육성

□ 소요예산 안 : 3,632,000천원 정도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소요금액	소요내역
계	3,632,000	
설립 출연금	50,000	설립 기본재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307-03)	500,000	인건비(213), 사무관리비(56), 공공운영비(200) 등
민간행사 사업보조 (307-04)	1,650,000	한마당대축제(750/녹색공간, 마라톤, 평생학습축제 제외),국제연극제(900)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532,000	문화센터 기획 공연 및 전시회 운영
민간자본사업 보조 (402-01)	900,000	문화센터 무대기계 교체 등 각종 공사, 집기구입, 자본 형성적 경비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승강기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10. 17.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10. 18.

2. 제안이유

-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투자유치를 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교통망 등 인프라가 미비하고 기술인력이 부족한 낙후지역으로 기업유치가 곤란하므로 획기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함
-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내 승강기관련 기업체 유치에 총력을 경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함

3.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 거창군외 소재하는 기업이 승강기전문농공단지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경우

나. 지원계획

○ 입지보조금

지 원 조 건		지 원 방 안	비 고
①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 신규상시고용 10명 이상	경남도외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지정에 따른 입지보조금 50%+추가 20% 지원 (※ 도비 40%, 군비 30%)	
	경남도내	70%지원(군비)	
②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이거나 신규상시고용 10명 이상	경남도 내·외	50%지원(군비)	

○ 기타보조금 : 경상남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방안과 동일

다. 소요예산

○ 투자기업 지원(안) (단위 : 억원)

구 분	계	도 비	군 비	비 고
계	138.09	72.74	65.35	
입지 보조금	104.09	45.54	58.55	
시설 보조금	8.00	6.40	1.60	
고용 보조금	12.00	9.60	2.40	
교육훈련 보조금	12.00	9.60	2.40	
이전 보조금	2.00	1.60	0.40	

※ 입지보조금 산출근거 (단위 : 억원)

구 분	대 상	계	도 비	군 비
계		138.09	72.74	65.35
입지 보조금 (134,419㎡)	소 계	104.09	45.54	58.55
	① 촉진대상 70%	79.69	45.54	34.15
	② 비 대상 30%	24.40	-	24.40

○ 군비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비고
계	65.35	3.58	31.7	30.07	
입지 보조금	58.55	3.58	28.3	26.67	
시설 보조금	1.60		0.8	0.80	
고용 보조금	2.40		1.2	1.20	
교육훈련 보조금	2.40		1.2	1.20	
이전 보조금	0.40		0.2	0.20	

4. 검토의견

- 가.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는 현재 조성 중(진도율 95%)에 있으며,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의 규정을 근거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신청서를 제출(‘16.6.20)하였으며,
- 나. 우리군은 대도시 보다 교통망 등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고, 관련 기술인력이 부족한 지역이라 기업유치 등에 애로사항이 있음
- 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입지지원), 같은 조례 제19조(국내기업의 지원) 및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제7조(승강기산업체 투자 지원)의 규정에 따라 기업유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 라. 금번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승강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외 소재 공장의 도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제23조의 경상남도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②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

- ①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지구 지정일 현재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33,058㎡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북부권역 등 낙후지역의 개별입지에 대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별도 지정할 수 있다.
- ③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은 시·군별 공장 입지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지정가능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④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기업이 지정지구에서 공장을 새로이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⑤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4조(입지보조금)

-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지구안에 입지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투자금

액의 범위는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및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으로 하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에는 도외 소재기업이 도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 ②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게 입지보조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분양가의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시장·군수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고용한 다음연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고용보조금)

-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1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12개월 기간 내에서 초과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은 공장 등록 후 5년으로 하되, 기업당 지원 총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에 대해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보조금)

-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12개월의 범위에서 초과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기간은 공장 등록 후 5년으로 하되, 기업당 지원 총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에 대해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보조금)

-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

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조금의 지급범위는 기업이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

제8조(이전보조금)

-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입지지원) <개정 2005.6.20>

-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따른 분양가의 차액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군수로부터 보조금 정산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제18조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 ① 군수는 도 외 소재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②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지구 지정일 현재 일반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③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도 외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 2. 도내·외 기업이 지정지구에서 공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제19조 (국내기업의 지원)

- ① 군수는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의 범위에서 분양가의 50퍼센트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군수로부터 보조금 정산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2(채권확보)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업계획서 이행확보를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에 1순위 저당권 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이전보조금)

- ① 도 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을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점과 공장을 동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2(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제7조(승강기산업체 투자 지원)

-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밸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청소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10. 17.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10. 18.

2. 제안이유

- 청소년이용시설 민간위탁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따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 시설명: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거창 국민여가캠핑장
- 위치: 북상면 덕유월성로 1312-96(월성청소년수련원 내)

○ 시설개요

구 분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캠핑장	
개원일	2014. 3. 22.		2014. 6. 12.	
규모/부지	지상2층/774,38㎡		46,426㎡	
근무인원	5 명		1 명	
주요시설	1층	우주체험관, 4D영상관	캐빈하우스	복층 4동
	2층	우주창의관, 교육체험실	방갈로	단층 3동
	옥상	천체관측관	야영데크	14동
부대시설			취사장	1동
			화장실	1동
			물탱크, 야외공연장, 전기 발전 시설 등	

나. 청소년이용시설 운영 현황

○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 최초위탁 : 2014. 3. 3. ~ 2016. 12. 31.

○ 거창 국민여가캠핑장

- 최초위탁 : 2014. 6. 12. ~ 2016. 12. 31.

다. 위탁사무 및 조건

○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 위탁대상 시설 및 물품 무상사용
- 운영비는 위·수탁자 협의로 예산범위 내 지원
- 관람료 등 입장료 거창군 수입 처리

○ 거창 국민여가캠핑장

-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수탁자 수입
- 캠핑장 사용료는 연4회(연8,780천원) 거창군에 납부
- ※ 입찰가격 및 협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위탁기간 : 2017. 1. 1. ~ 2020. 12. 31.일까지 4년간

○ 위탁기간 만료 시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마. 수탁자격 : 경상남도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바. 예산지원 : 시설개·보수비 중 거창군에서 결정한 사항 지원

4. 참고사항

가. 위탁운영 계획 : 붙임 참조

나. 청소년이용시설 수탁관리운영 재산목록 :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위탁운영)
-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검토의견

가.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및 국민여가 캠핑장은 관람객 및 이용객 증가와 수입액 증가 등 지속적 성과를 거양하고 있고

나. 인근 월성청소년수련원과의 업무 연계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며, 또한 그동안의 업무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

다. 금번 청소년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위탁운영)

- ①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2항·제3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이용료와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붙임 1] 청소년이용시설 위탁운영 계획

청소년이용시설 위탁운영 계획

2016. 12. 31일자 청소년이용시설 민간위탁 운영 기간 만료에 따른 운영 계획입니다.

□ 시설현황

- 시설명 :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거창국민여가캠핑장
- 위치 :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312-96(월성청소년수련원 내)
- 운영유형 : 민간위탁운영
- 시설유형 : 청소년이용시설
- 시설규모

구 분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캠핑장		
개원일	2014. 3. 22.	2014. 6. 12.		
규모/ 부지	지상2층/774,38m ³	46,426m ³		
근무인원	5 명	1 명		
주요 시설	1층	우주체험관, 4D영상관	캐빈하우스	복층 4동
	2층	우주창의관, 교육체험실	방갈로	단층 3동
	옥상	천체관측관	야영데크	14동
			취사장	1동
부대 시설			화장실	1동
			물탱크, 야외공연장, 전기 발전 시설 등	

※ 청소년이용시설 : 거창군청소년활동시설 설치 운영조례 제2조 4의 시설

□ 위탁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위탁운영)
-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최근 3년간 운영 실태**

○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 관람이용현황

(단위 : 명)

연도	계	총방문 인원	체험인원(명)				
			10,218	4D 영상관	가변 중력	평행 감각	월면 건기
계	158,560	49,922	54,319	21,400	15,415	13,614	3,890
2014년	45,330	10,598	17,366	7,328	4,969	3,632	1,437
2015년	49,794	7,606	21,094	8,090	5,863	5,506	1,635
2016년 7월	63,436	31,718	15,859	5,982	4,583	4,476	818

- 수입 및 입금현황

(단위 : 원)

구분	실입금액(a)	감면액(b)	카드 수수료(c)	총수입 (a+b+c)
계	140,073,800	19,720,950	1,361,739	161,156,489
2014년	53,900,040	0	521,460	54,421,500
2015년	53,154,050	8,338,450	599,500	62,092,000
2016년 7월	33,019,710	11,382,500	240,779	44,642,989

※ 총수입 161백만원은 군 세외수입으로 납부

- 운영비 지원 : 매년 230백만원 중(인건비 54%, 제세 공과금 9%, 프로그램 운영비 18%, 기타 관리비 등 18%)

○ 거창 국민여가캠핑장

- 이용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일반	청소년	계	비고
계	8,262	3,542	11,804	
2014년	3,419	1,465	4,884	
2015년	3,505	1,503	5,008	
2016년 7월까지	1,338	574	1,912	

- 수입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약금	차 입	기타수입	계	비고
계	160,848,025	46,692,429	0	207,540,454	
2014년	56,582,460	10,280,150	0	66,862,610	
2015년	66,894,567	21,431,755	0	88,326,322	
2016년 7월까지	37,370,998	14,980,524	0	52,351,52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에 의거 우리군 세외수입으로 연4회 2,195천원 분기별 납부(연 8,780천원), 나머지 수익금은 거창홍사단 자체수입

□ **민간위탁 운영 성과**

○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 최근 3년간 평균 5만 명 이상 관람하고 있고 관람료 수입도 연 5천만 원 이상 거두고 있음.

○ 거창국민여가캠핑장

- 2014년 개장이후 매년 청소년 등 5천 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수입도 매년 6 ~ 9천만원을 올리고 있으며, 아울러 청소년 활동 등 군민 여가생활에 기여를 하고 있음.

□ 민간위탁 만료에 따른 운영 방안

구분	장 점	단 점
계약 갱신	○ 검증된 단체 - 오랜기간 위탁운영으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며 수련원, 캠핑장, 과학관 업무의 연속성 유지로 효율적인 관리, 운영	○ 거창홍사단의 수련원, 과학관, 캠핑장 위탁관리로 타 단체의 시기심 유발
공개 모집	○ 신규단체의 선정기회 부여	○ 업무의 비연속성 ○ 검증되지 않은 단체운영시 문제발생 소지

□ 부서의견

- 현 수탁자는 오랜 운영경험으로 전문성이 확보되었고 월성청소년수련원과 연계관리로 효율적인 운영도모를 위해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추진계획

-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4년
 - 만료시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 신청자격 : 법인 및 단체
 - 청소년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주된 사무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
- 위탁운영 계획 : 계약갱신 또는 공개모집
- 위탁사무 및 조건
 - 건물 및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및 무상사용
 - 운영관리비는 수탁자 부담
 - 위탁대상 시설의 개.보수비 중 거창군에서 심사 결정한 사항 지원
 - 관련법규 준수 의무
 - 위탁기간 : 2017. 1. 1 ~ 2020. 12. 31일까지 4년간

□ 향후 추진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위탁운영 접수(계약갱신)/모집공고(공개모집)	2016. 11월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2016. 11월	
협약체결/ 공증	2016. 12월	
수탁자 운영	2016. 1월	

[붙임 2] 청소년이용시설 수탁 관리운영 재산목록

청소년이용시설 수탁 관리운영 재산목록

2016. 10.



위탁 관리운영 재산목록

○ 청소년이용시설

명 칭	토 지 소 재 지	구 조	층 수	면 적 (m ²)	비 고
월성우주창의과학관	북상면 월성리 1608	일반목	지상 2층	774.38	
거창국민여가캠핑장	북상면 월성리 1608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	327.5	
계				1,101.88	

○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 위탁 시설 및 장비현황

층별	시설내역	면적(m ²)	내 용	비고
합 계		774.38		
지상 1층 (440)	체험관 “우주체험관”	176.63	가변중력체험, 월면건기체험 우주에서의 체중변화 우주관련 전시 패널 5종 (우주대폭발,빅뱅 / 태양계의 구성 별과별자리/ 최초의 순간/ 우주개발역사)	
	4D영상관	92.15	30인용, 6축 모션베이스, 4D영상물 3편 1년 6개월 무상제공	
	기계실, 조정실	13.65	4D영상관 조정	
	사무실	16.00	행정사무공간 / 5인	
	홀	63.27	안내데스크, RFID 발권시스템 땅콩의자, 음수대 등	
	화장실	78.30	화장실(22.86), 계단실(27.20) 엘리베이터실(6.24) 방풍실(9.60), 4D영상관 통로(12.40)	
지상 2층 (334.38)	체험관 “우주창의관”	182.81	평형감각적응, 우주건기, 우주인모형 포토존 등 우주관련 전시 패널 6종 (우주임무완수 / 우주복에 담긴 과학 우주인의 하루 / 임무통제센터와 우주왕 복선 / 우주비행원리 / 국제우주정거장)	
	교육체험실	16.00	체험테이블 6개, 의자 30개	
	홀	79.27	우주인 발급 시스템, 포토존, 음수대 등	
	기타	56.30	화장실(22.86), 계단실(27.20) 엘리베이터실(6.24)	
옥상	천체관측관		슬라이딩 돔, 반사굴절망원경, 태양관측시스템	

- 위탁 물품 현황

연번	품목	규격명	단가 (천원)	수량	금액 (천원)	보관 장소	물품 등록
1	음수기	음수기,케이에스 피,KSP-821CS,냉수2구/초등 학생용 430*360*850mm	1,530	2	3,060	1,2층 홀	등록
2	컴퓨터	데스크톱컴퓨터, 삼성전자, CN/DB405S2A-B14G, Intel Core i3 3220(3.3GHz)	750	5	3,750	1층 사무실	등록
3	모니터	액정모니터, 삼성전자, CN/LS19C20KBRSGKR, 48.19cm	260	5	1,300	1층 사무실	등록
4	프린터	레이저프린터, 신도리코 CN/CL8600NH,A3/컬러 26/흑백32ppm	1,298	1	1,298	1층 사무실	등록
5	책상	책상, 퍼스트삼용, FS-112, 1200*700*720mm	133	5	665	1층 사무실	등록
6	이동 서랍	이동형파일서랍, 퍼스트삼 용, FSA-030, 420*555*600mm	99	6	594	1층 사무실	미등록
7	의자	작업용의자, 퍼스트삼용, FSBC-AU200, 610*630*1040~1090mm	128	6	768	1층 사무실	등록
8	5단완 도어책장	캐비닛, 퍼스트삼용, FS-184F, 800*415*1882	236	3	708	1층 사무실	등록
9	프린터 테이블	캐비닛, 퍼스트삼용, FS-084D, 800*415*802	137	1	138	1층 사무실	등록
10	수강용 의자	작업용의자, 퍼스트삼용, FSBC-222, 490*510*790mm	54	30	1,620	2층 체험교 육실	미등록
12	책상 유리	1200*700	34	5	170	1층 사무실	미등록
13	수강용 테이블	1500*600*750	110	6	660	2층 체험교 육실	등록
14	고정식 화이트 보드	1200*900	98	2	196	2층 체험교 육실	미등록

○ 거창국민여가캠핑장
- 시설물 목록

구분	수량	면적	용도	비고
캐빈하우스	4동	42.61㎡×4동=170.44㎡	숙박(복층)	경량목구조
방갈로	3동	31.53㎡×3동=94.59㎡	숙박(단층)	경량목구조
야영데크	14동	23.04㎡×14동=322.56㎡	텐트전용	목재
방문자동	1동	53.46㎡	사무실	경량목구조
취사장	1동	67.32㎡	공동취사장 사위장	철근콘크리트조
화장실	1동	87.20㎡	남녀화장실	철근콘크리트조
도로	200m		진입도로	아스콘포장
데크로드	58.5m		캠핑장 내	목재
기타시설	연못2개소, 물탱크1개소, 야외공연장, 전기시설(특 고압 수전 판), 소화시설 등			

- 물품목록

품명	모델(규격)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고
계	47종	1,030		44,342,000	
TV	UN32F6100AF	8대	700,000	5,600,000	가전제품
컴퓨터	DM300SIA-B12	2대	620,000	1,240,000	“
모니터	LS23C570HAS/KR	2대	285,000	570,000	“
드럼세탁기	19KG	2대	1,300,000	2,600,000	가전제품
냉장고	237리트	8대	415,000	3,320,000	“
밥솥	CRP-HLF1060S	8대	200,000	1,600,000	“
핸디청소기	DWV-908HK	8대	54,000	432,000	“
업소형청소기	VN9104NNT,	1대	180,000	180,000	“

품명	모델(규격)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고
	AKOR				
선풍기	HF-B14SME	8대	45,000	360,000	“
전기주전자	KO-2701	8대	49,000	392,000	“
방송시설		1식	8,107,000	8,107,000	방송시설
카운터장	2,400*2,400*400	1	2,380,000	2,380,000	부대물품
카운터	900*2,300*600	1	1,350,000	1,350,000	“
TV장	100*430*400	8	470,000	3,760,000	“
창고선반	6면4단, 폭400	2	700,000	1,400,000	“
예약시스템		1식	5,000,000	5,000,000	홈페이지
소화기	3.3Kg	10	20,900	209,000	

〔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10. 17.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10. 18.

2. 제안이유

-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따라 민간위탁 공개모집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 시설명: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 위치: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4길 60
- 개원일: 2001. 4. 28.
- 사업비: 144,400천원(군비 144,400천원)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1~3층), 경량철골구조(4층)

구 분	교실수	구 성 내 용	비 고
1층	4	어린이도서관, 인터넷부스, 보드 카페, 사무실	
2층	6	멀티미디어실 3개, 다목적 홀, 댄스연습실, 북 카페	
3층	5	동아리실 2개, 프로그램실 2개, 세미나실	
4층	2	밴드연습실, 탁구장	
옥외	3	농구장, 창고, 야외테라스	

○ 시설규모: 수용인원 131명/지상4층 1,013m²

나.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현황

- 최초 위 탁 : 2001. 04. 28 ~ 2003. 04. 27(2년)
- 1차 갱신계약: 2003. 04. 28 ~ 2004. 12. 31(1년8개월)
- 2차 갱신계약: 2005. 01. 01 ~ 2007. 12. 31(3년)
- 3차 갱신계약: 2008. 01. 01 ~ 2010. 12. 31(3년)
- 4차 갱신계약: 2011. 01. 01 ~ 2013. 12. 31(3년)
- 5차 갱신계약: 2014. 01. 01 ~ 2016. 12. 31(3년)

다. 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근무인원(상시)	이용인원 (2015년기준)	수입 및 지출현황(천원)		
		수입(A)	지출(B)	증감 (A-B)
계 : 5명 - 관 장 :1명 - 팀 장 :1명 - 지도사 :3명 - 사 서 직 :1명	계 : 43,425명 -프로그램 : 39,247명 -어린이도서관 : 4,178명	194,223 (운영보조금, 기타보조금, 자체수입)	194,223 -인건비: 120,068 -제세공과금: 10,396 -프로그램운영비: 38,031 -일반운영비: 25,728	0

라. 위탁사무 및 조건

- 건물 및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및 무상사용
- 운영관리비는 수탁자 부담

마. 위탁기간: 2017. 1. 1 ~ 2020. 12. 31.까지 4년간

- 위탁기간 만료 시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바. 수탁자격 : 청소년육성(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사. 예산지원: 시설개·보수비 중 거창군에서 결정한 사항 지원

4. 참고사항

가.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운영 계획 : 붙임 참조

나.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수탁 관리 운영 재산목록 : 붙임 참조

5. 검토의견

가. 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기간이 '16.12.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후 운영기관 선정이 요구 됨

나. 또한 운영보조금 등 수입 194백만원에 비해 인건비가 120백만원으로서 수입의 61.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프로그램 운영비는 38백만원으로써 19.6%를 차지

다. 청소년 육성(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기 운영경험에 따라 업무프로그램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

라. 금번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9조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와 해당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6조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위탁운영)

- ①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2항·제3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이용료와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

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 5조 (수탁기관의 선정)

-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장 추천 군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붙임 1]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운영 계획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계획

2016. 12. 31일자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 기간 만료에 따른 계획입니다.

□ 위탁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기본법」 제59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위탁운영)
-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 시설 및 운영현황

- 시설명 :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4길 60
- 개원일 : 2001. 4. 28.
- 운영유형 : 민간위탁운영
- 시설유형 : 청소년수련시설
- 사업비 : 144,400천원(군비 144,400)
- 시설규모 : 수용인원 : 131명, 건물/부지 : 지상4층/1,013m²

구분	면적 m ²	교실수	구 성 내 용	비고
1층	269	4	어린이도서관, 인터넷부스, 보드 카페, 사무실	
2층	260	6	멀티미디어실 3개, 다목적 홀, 댄스연습실, 북 카페	
3층	244	5	동아리실 2개, 프로그램실 2개, 세미나실	
4층	130	2	밴드연습실, 탁구장	
옥외	22	3	농구장, 창고, 야외테라스	

□ **이용인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184,367	35,804	31,848	29,126	44,164	43,425
프로그램 참여	173,762	35,804	31,848	27,933	38,930	39,247
어린이 도서관	10,605	-	-	1,193	5,234	4,178
비 고	- 어린이도서관 2013년 2개월 운영 - 2013, 2014 : 세월호사건, 메르스 발생 - 최근 2년간 일 평균 이용자 : 120명					

□ **민간위탁 운영 성과**

- 2003년 시범청소년수련시설 선정
- 2012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우수운영기관” 선정
- 2012년 여성가족부 최우수프로그램 ”장관상“ 수상
- 2013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우수” 수상
- 2014년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우수위원회” 선정
- 2015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최우수” 선정

□ **추진절차**

- 공개모집 공고 : 11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6~9명) : 11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선정 : 11월
- 위탁계약 체결 및 공증 : 12월

□ **추진계획**

-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4년
- 수탁자격 :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위탁사무 및 조건
 - 건물 및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및 무상사용
 - 운영관리비는 수탁자 부담
 - 위탁대상 시설의 개.보수비 중 거창군에서 심사 결정한 사항 지원
 - 관련법규 준수 의무
 - 위탁기간 : 2017. 1. 1 ~ 2020. 12. 31일까지 4년간
 - 위탁기간 만료시는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 수탁기관 신청 : 공개모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
 - 위원구성 : 6 ~ 9명
 - 위원선정 : 관련공무원, 군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심사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 협약체결 : 수탁자와 협약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 **향후 추진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모집공고(공개모집)	2016. 11월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2016. 11월	
협약체결/ 공증	2016. 12월	
수탁자 운영	2017. 1월	

위탁 관리운영 재산목록

□ 토지 및 건물 목록

◦ 토지 :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31

토 지 소 재 지	지 목	지 적(m ²)	비 고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31	대지	1,013	
계		1,013	

◦ 건물 : 시설규모 : 1,013m²(306평) / 연면적 - 928m²(281평)

동별	층별	용도	건축연월일	면적
1동	1층	인터넷부스, 보드카페, 안내데스크, 글벗나래도서관, 사무실	2001	269m ²
	2층	다목적 홀, 공연연습실, 북 카페, 멀티미디어방1,2,3	2001	260m ²
	3층	세미나실, 프로그램실1,2, 동아리방1,2	2001	244m ²
	4층	밴드연습실, 탁구장	2005.10	130m ²
외부		창고	2001	22m ²
		농구장	2001	

[재 단 법 인 거 창 군 장 학 회 출 연 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10. 17.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10. 18.

2. 제안이유

-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

3. 출연개요

- 가. 근거법령: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나. 대 상: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대표 양동인)
- 다. 사 업 비: 500,000천원(출연 예정금액)

- 2017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천원)

사업기간	2016년 예산액	2017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7년	1,000,000	500,000	500,000			500,000	

- 라. 사업내용: 장학사업 등

4. 부서 의견

- 가.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학사업에 대한 출연금 지원으로
- 나. 거창군의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거창의 교육경쟁력을 향상 강화 기대됨

5. 참고사항

- 가. 출연 기관현황: 붙임 참조
- 나. 관계 법령: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 검토 의견

- 가.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거창군수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에 따라 장학사업에 대한 출연금 지원으로 거창군의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 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자체 수입(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예산을 편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 다. 2014년 8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는 세외수입 중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 5종을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 등의 별도 세입 과목으로 분리하여 신설하면서 자체수입 감소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우리군이 해당됨.
- 라. 따라서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하였던 교육환경 개선 보조사업이 교육기관으로 지원될 수 없음으로 인해

장학회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포함하여 출연함

- 2016년 1,000백만원을 출연하였으며, 2017년 출연계획안은 500백만원으로써
- 사업내용은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 500백만원(2016년 450백만원)

※ 참고로 거창군장학회는 2005년 12월 재단법인 장학회 설립 허가(경남도교육청 허가 제17-162호)를 받아 2009년 11월 장학기금 100억목표를 달성하였고 2006년부터 매년 장학금 지원사업만을 하고 있으며 현재 장학기금은 10,139백만원임(기본재산 10,000백만, 보통재산 139백만 / 2016년 9월현재)

마. 거창군 장학회운영 세칙에 의거 장학사업 뿐만 아니라 제15조(교육환경개선사업) 및 제26조 제6항(인재집중육성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향후 출연금 뿐 아니라 자체수입을 충당할 수 있는 기부금 모금활동 등을 통하여 장학회사업의 효율성의 제고를 위한 방안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바. 금번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7.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학사업 등을 시행할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의 설립과 그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정관)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

제4조(임원)

- ① 장학회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 ② 이사와 감사는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되, 거창군수, 거창군의회의장,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임면 및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이사회)

- ① 장학회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사무국)

- ① 장학회에는 장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 ① 장학회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3. 교육여건 개선사업
 4. 국내·외 청소년과의 교류사업
 5.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장학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거창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과 그 밖의 재산
3. 기본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경영을 통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재정지원)

-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타조례개정 2014.12.31.)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등)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지원)

군수는 장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장학회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장학회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인력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인력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 ① 군수는 장학회의 사업수행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장학회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장학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1.01.05, 조례 제20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된 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8호 개정 2014.12.31.)

제1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붙임 1] 출자·출연 기관현황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출연기관)

설립근거	법 률 :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화번호 : 055-940-8812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홈페이지 : www.gcdream.kr			
주요연혁	- 설립연도 : 2005. 12. 16		기관형태		출연		
	- 장학기금 10억원 달성 : 2009년		(출자, 출연)				
인원현황 (‘16.10.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7명		-		17명		
임 원 (‘16.10.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당연직)	양○○	거창군수		당연직(재직기간)		
	상임이사	신○○	민주평통회장		2016.9.29.~2018.9.28		
	이사	강○○	거창군교육장		당연직(재직기간)		
		강○○	모동기업대표		2005.12.16~ 2017.12.15		
		이○○	전) 경남교육위원		2005.12.16~2017.12.15		
		송○○	전 창호초등학교 교장		2016.9.29~2017.12.15		
		최○○	화성건설 대표		2005.12.16~2017.12.15		
		오○○	전 거창중학교 교장		2016.9.29~2018.9.28		
		김○○	경남학교운영위원 연합회장		2016.9.29~2018.9.28		
		도○○	거창홍사단 대표		2013.12.16~2017.12.15		
		최○○	김순호세무회계사		2013.12.16~2017.12.15		
		강○○	거창위생 대표		2013.12.16~2017.12.15		
		민○○	거창신문 대표		2016.6.10.~2016. 8. 4		
		양○○	의용소방연합회 회장		2016.6.10.~2017.12.15.		
		이○○	함께하는 거창 대표		2016.6.10.~2017.12.15.		
	감사	이○○	이재민세무사대표		2013.12.16~2017.12.15		
감사	표○○	YMCA 이사장		2016.9.29~2017.12.15			
주요기능	-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필요한 지원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11,314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1,000 (직전연도말 기준)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재무현황 (백만원) ‘15.12.31기준	자산	10,515 (자산 총액)
	예산액 ²⁾	12,030	13,228	11,830		부채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³⁾	690	1,400	1,000		자본	10,515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5.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1,738			1,223		10,515	

2017 회장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유치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10. 21.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10. 21.

2. 제안이유

-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 유치로 스포츠메카 거창 홍보
- 관광자원 및 농특산품 판매·홍보 및 숙박·요식업소 특수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유치계획

연도별	대 회 명	대회개최 (예정)	참가규모	사업비 (백만원)
2017년	2017 회장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2017.1월중 (6일간)	2,700명	105 (군100, 자부담 5)

나. 대회개요

대 회 명	2017 회장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주 최	한국초등배구연맹
주 관	경남배구협회/거창군배구협회
후 원	거창군
일 정	2017. 1월중(6일간)
참 가 팀	45개팀
참가인원	2,700명(선수 800, 임원 200, 지도자180, 학부모,교직원 등 1,520)
예 산	105백만원(군비 100, 자부담 5)
예산내용	대회준비비, 참가팀보조비, 대회운영비(코트설치철거, 시상, 인쇄, 홍보, 심판, 심판, 숙박비 등)

다. 기대효과

- 연령이 어린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유치를 통하여 가족동반 또는 가족이 그룹으로 지역을 방문함으로써 지역경제 파급 효과 극대화
 - ⇒ 지역경제 파급효과 : 전지훈련 기준 399백만원(최소적용)
경남숙박 여행 기준 836백만원
국내숙박 여행 기준 996백만원
- 전국규모 대회 유치로 우리군 체육인재 양성과 저변확대 기여

4. 참고사항

가.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16.10.14: 2017년 회장기 전국초등학교배구대회 유치 계획(보고)
- '16.10.17: 대회 유치신청서 제출(한국초등배구연맹)
- '16.10.18: 군의회 임시회(제221회) 일반의안 제출
- '16. 11월중: MOU 체결
- '17. 1월중 : 대회개최

나. 예산조치: 2017년도 본 대회유치비 본예산 반영

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출비용 추정서: 붙임 참조

5. 검토의견

가. 연령이 어린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유치를 통하여 가족동반 또는 가족이 그룹으로 지역 방문함으로써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며

나. 전국규모 대회 유치로 우리군 체육인재 양성과 저변확대 기여 및 스포츠메카로서의 거창 홍보효과가 있어

다. 금번 2017년 회장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유치동의(안)은 승임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붙임 1] 비용추계서

2017 회장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유치 비 용 추 계 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전국단위 초등학생 배구대회 유치를 위한 예산지원
- 관련조문
 - 제3조(대회유치금 지급)
 - 제6조(권리와 의무)

2. 비용추계의 결과

-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총 비용(a - b)	0	100	0	0	0	100	
세출	국비						
	도비						
	군비	0	100	0	0	0	100
	소계(a)	0	100	0	0	0	100
세입	0						
	0						
	소계(b)						

3. 관련 의견

-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유치로 스포츠메카 거창 홍보
- 관광자원 및 농특산품 판매·홍보 및 숙박·요식업소 특수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작성자 : 체육시설사업소장 최 종 승

[붙임 2]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출비용 추정서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출비용 추정

산출기준

(1박 / 2일 기준)

구분	경남 전지훈련 기준 자체비율 적용 산출내역(원)					비 고
	1박/ 2일	2박/3일	3박/4일	4박5일	5박6일	
여행상품구입	2,784	3,341	3,898	4,454	5,011	
숙박비	20,908	41,816	62,724	83,632	104,540	
교통비	11,948	14,338	16,728	19,118	21,508	
식/음료비	27,591	41,391	55,191	68,991	82,791	
문화/오락시설	2,633	3,172	3,711	4,250	4,789	
스포츠/경기	861	1,031	1,201	1,371	1,541	
기념품 및쇼핑	4,759	7,139	9,519	11,899	14,279	
기타 여행관련	1,620	2,106	2,592	3,078	3,564	
기 타	557	667	777	887	997	
합 계	73,661	115,001	156,341	197,680	239,02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1 국민여행실태조사.

전지훈련 기준 산출결과

구 분	인 원 (명)	산 출 기 준	추정금액 (천원)	비 고
계	2,700		399,525	
선 수 (800명)	548	156,341원 × 548명 = 85,674,868원	85,674	3박4일적용
	216	197,680원 × 216명 = 42,698,880원	42,698	4박5일적용
	36	239,020원 × 36명 = 8,604,720원	8,604	5박6일적용
임원(200명)	200	239,020원 × 200명 = 47,804,000원	47,804	5박6일적용
지 도 자 (140명)	124	156,341원 × 124명 = 19,386,284원	19,386	3박4일적용
	48	197,680원 × 56명 = 11,070,080원	11,070	4박5일적용
	8	239,020원 × 48명 = 9,488,640원	9,488	5박6일적용
학부모, 교직원 등	1,520	115,001원×1,520명=174,801,520원	174,801	2박3일적용

□ **여행경비 항목별 산출내역**

(1박 / 2일 기준)

구분	숙박여행 지출액 구성비(%)	국내 숙박여행(원)	경 남	
			경남 숙박여행(원)	전지훈련 (원)
여행상품구입	5.5	11,052	9,281	2,784
숙박비	17.7	35,567	29,869	20,908
교통비	23.6	47,422	39,825	11,948
식/음료비	32.7	65,708	55,182	27,591
문화/오락시설	5.2	10,449	8,775	2,633
스포츠/경기	1.7	3,416	2,869	861
기념품 및 쇼핑	9.4	18,888	15,863	4,759
기타 여행관련	3.2	6,430	5,400	1,620
기타	1.1	2,210	1,856	557
합계	100.1	201,142	168,920	73,66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1 국민여행실태조사.

- 2011년 기준 국내 1박2일 숙박여행객의 평균지출비용은 201,142원이며 **경남은 168,920원**임
- 일반 관광객과 전지훈련 참가자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지출비용을 추정하기로 함
 - 전지훈련 참가자는 일반관광객과는 달리 주간에 관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숙박, 식/음료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30%만 책정함**
 - **숙박비는 단체할인금액으로 70%만 책정함**
 - **식/음료비는 식단이 일정하기 때문에 50%만 책정함**
- 따라서, **1박2일 기준으로 전지훈련 참가자의 지출비용은 73,661원**으로 추정됨

Think Tank of Gyeongsangnam-do! GYEONGNAM DEVELOPMENT INSTITUTE www.gndi.re.kr



경남발전연구원

김태영

/ Kim, Tae-Young 010-6283-9363 tykim@gndi.re.kr

사회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641-72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용호동 5-1) tel. 055 239 0148 fax. 055 266 2079

* 상기자료는 경상남도에서 각종대회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산출 근거 자료임.